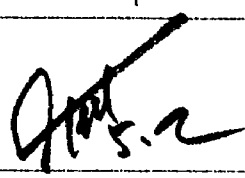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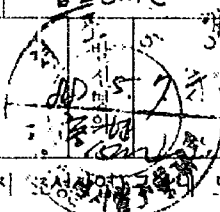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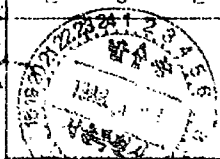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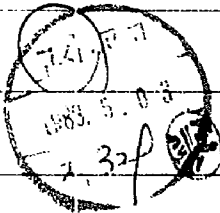


# 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도시30310-168	(전화: )	시행장 특별취급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. 10.5.③.1.	시 장	
수신처 보존기간	3년		
시행일자	'88. 5. 3		
보조기관	도시계획국장 전결 도시계획과장 김4/29 종합계획과장 명수		
기안책임자	강창구	문서 시행일 1988.5.03 도시계획과장	반송인
경유 수신 참조	각안참조		
제목	도시계획사업(입단의주택지 조성사업)의 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 및 변경		
제1안			
수신 내부결재			
제목 같은건			
<p>1. 목동지구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양천구 목동 408일대 도시계획사업(입단의 주택지 조성사업)구역내 도시계획시설(도로)변경 요청이 있어 검토한바 동사항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호에 의거 경미한 도시계획변경 사항이므로</p> <p>2. 도시계획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권한의임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 코저 합니다.</p> <p>0 도시계획시설(도로)변경</p>			

358

구분	종 류	폭원(㎡)	연장(㎡)	시 점	종 점	비 고
기정	대3-162	25	90	신정동82-4	신정동 85-49	
폐지	대3-162	25	90	신정동82-4	신정동85-49	85.9.1 폐지방침
기정	소 1-1	10	120	목동405-403	목동408-120	
폐지	소 1-1	10	120	목동405-403	목동408-120	대3-149 중복
기정	소 1-2	8	200	소 1-1	목동408-22	
폐지	소 1-2	8	200	소 1-1	목동 408-22	
기정	소 2-1	8	150	목동408-239	목동408-183	토지이용 (환지계획)
폐지	소 2-1	8	150	목동408-239	목동408-183	
기정	소 2-2	8	220	신정동85-30	신정동85-145	
폐지	소 2-2	8	220	"	신정동84-145	토지이용 (환지계획)
기정	소 2-3	8	120	목동406-166	목동408-160	대3-147 와 중복
폐지	소 2-3	8	120	목동406-166	목동408-160	
신설	중 2-1	15	134	신정동82-1	목동408-120	대3-162 대체
기정	소 2-4	8~10	44	신정동 82-14	신정동 85-3	
폐지	소 2-4	8~10	44	"	"	
제 2 안						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						
도시계획사업(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)구역내 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 및 변경						

3부절제

1988. 5. 2  
도시계획국장

1. 도시계획사업(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)구역내 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 및

변경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 결정 하였기 이를 고시  
합니다.

2. 관련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및 양천구청 도시정비과와 목동지구개발

사업소(토목공사과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1988. 4

서울특별시

가. 변경결정 조서 : 제1안 이기시행

나. 도면 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, 양천구청 도시정비과

목동지구사업소(토목공사과), 비치도면과 같음. 끝.

제 3 안

수 신 건설부장관

참 조 도시계획과장

제 목 같은건

1. 우리시 관내 양천구 목동 408일대 도시계획사업(일단의 주택지 조성)

구역내 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 및 변경결정을 별첨 고시문 사본 및 도면과 같이 결정

고시 하였기 보고합니다.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. 끝.

제 4 안
수 신 양천구청장
참 조 도시정비과장
제 목 같은건
1. 귀구 관내 목동 408일대 도시계획사업(일단의 주택지 조성) 구역내 도시계획
시설(도로)결정 및 변경결정을 별첨 고시문 사본 및 도면과 같이 결정 고시 하였기 통보
하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도록 하고
2. 사업 시행부서인 목동사업소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기 바람
도시계획법 제3 조에 의한 지적고시는 정확한 지적공부(지적도, 토지대장등)을 대조확인
하여 시행할 것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. 끝.
제 5 안 338
수 신 수신처 참조
제 목 같은건
1. 양천구 목동 408일대 도시계획사업(일단의 주택지 조성) 구역내 도시계획
시설(도로)결정 및 변경결정을 별첨 고시문 사본 및 도면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 하였기
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. 끝.

수신처 : 시설계획과장, 도토파장

제 6 안

수 신 총무처장관

제 목 관보 게재의뢰

1. 다음과 같이 관보게재를 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관보 게재구분 : 고시

나. 게재건명 : 도시계획사업(일단의 주택지 조성)구역내 도시계획시설

(도토)결정 및 변경결정

다. 법적근거 : 도시계획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. 끝.

제 7 안

수 신 목동지구개발사업소장

제 목 같은건

1. 귀소에서 요청한 양천구 목동 408일대 도시계획사업(일단의 주택지 조성)

구역내 도시계획시설(도토)결정 및 변경결정 요청은 별첨 고시문 사본 및 도면과 같이

변경결정 고시 하였기 통보하니 관계법 절차에 의해 양천구청장과 긴밀히 협의하여

사업시행키 바람.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. 끝.

